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물 관리 기술 발전 및 물 산업
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 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김성환 (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개정('26.4.7 공포,
'26.7.8 시행)으로 해외진출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물기업 전체로
확대됨에 따라 시행령에 반영 필요

3. 주요내용

-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물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업무에서 ‘중소
기업’으로 한정하는 자구 삭제(안 제22조제1항제7호 개정)
- 법률 개정으로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중소기업에서 물기업
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시행령의 전문기관 위탁 업무에서 중소기업으로
한정하던 것을 삭제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제7호 중 “물기업 중 중소기업”을 “물기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업무의 위탁) ①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	제22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6의2. (생 략)	1. ~ 6의2. (현행과 같음)
7. 법 제21조에 따른 <u>물기업 중</u> <u>중소기업</u> 의 해외시장 진출 지 원	7. ----- <u>물기업</u> --- ----- 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후에너지환경부 물산업협력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640